

조선전기 女眞 僞使의 발생과 處理 問題에 대한 고찰*

한 성 주**

머리말

- I. 5鎮 설치와 女眞 僞使의 발생
 - II. 女眞 僞使의 사례와 유형
 1. 印信을 빌려 쓴[借著] 경우
 2. 元나라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이름을 詐稱[冒名]한 경우
 4. 여진 衛所의 使送(使人)을 사칭한 경우
 5. 官敎를 僞造, 借用, 賣買하여 내조하는 경우
 6. 두 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 III. 女眞 僞使에 대한 대응과 처리
- 맺음말

요약

조선전기 소위 ‘女眞 僞使’의 발생은 4군 6진의 설치 이후 조선과 忽刺溫 兀狄哈과의 직접적인 통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다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09 - 327 - A00013).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투고일: 2010년 10월 29일

심사일: 2010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5일

여진인들에게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진 위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印信을 빌려 쓴 경우, 둘째 元나라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경우, 셋째 다른 사람의 이름을 詐稱한 경우, 넷째 여진 衛所의 使送(使人)을 사칭한 경우, 다섯째 官敎를 僞造, 借用, 賣買하여 내조한 경우, 여섯째 두 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유형들은 印信과 관련된 것,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여진 위소의 사송을 사칭한 것에서 점차 관교를 위조, 차용,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여진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告身(官敎)의 지급이 점차 조선과의 통교권을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관직을 받은 여진인들이 그 증명으로서 조선으로부터 받았던 고신(관교)을 변경의 鎮將이나 首領에게 제시함으로써 조선과 통교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문서로 된 이러한 고신은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한 것이었다는데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들 ‘여진 위사’를 방지하는 방편으로 여진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진인들에 대한 통교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大國이 먼 지방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으로 용서하고 돌려보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선은 邊將으로 하여금 여진인들의 관교를 빠짐없이 考閱한 뒤에 올려 보내게 하였고, 혹 변경에서든, 혹 상경해서든 관교를 僞造, 借用, 賣買한 경우에는, 그 관교를 追奪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교를 추탈하는 것은 여진인들, 특히 성저야인들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는데, 성저야인들은 관교를 빌려서 상경하여 속이고는 俸祿을 받거나 中樞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행태가 이미 舊習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관례가 되어버린, 조선과의 통교 방식이 되어버린 이 행태들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통교를 제한하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城底野人, 즉 두만강 유역의 중심부락으로 성장한 ‘藩胡 部落’의 반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여진 위사’의 유형을 통해 보면, 이들은 결국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감추고 조선과 통교하려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과의 통교를 목적으로 인신과 관교를 속이고, 위조하며, 다른 사람이나 위소의 사송을 사칭하는 등 조선에서 정한 통교 방식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간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위사’와 관련된 연구 접근 방식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선전기 ‘위사’의 명칭과 개념,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조선(朝鮮), 여진(女眞), 위사(僞使), 사례(事例), 유형(類型), 대응(對應), 처리(處理)

머리말

조선은 女眞 勢力에 대해 懷柔政策을 기본으로 한 強穩兩面의 羈縻政策을 실시하였는데, 朝貢 형태의 무역을 허락하고, 내조한 여진인들에게는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면서 조선에 복속시켰으며, 이를 통해 변경의 안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여진인들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무력을 동반한 정벌로써 이를 응징하기도 하였다.

여진 세력이 하나의 통일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많게는 수백에서 적게는 수십 명 단위의 부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각 부족과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진 세력 또한 조선에서 받은 관직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것을 조선과의 通交에 활용할 수 있었다. 즉 조선 또는 명에서 받은 인신이 찍힌 서계 내지는 관직을 받았던 ‘告身’ 등이 있어야지만 조선과의 통교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통교체제가 정비되어 갔다.¹⁾

1) 조선과 여진과의 통교문제를 다룬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이현중, 1960, 「조선전기 서울에 온 왜야인에 대하여」, 『향토서울』 10; 이현희, 1963, 「선조 향화야인 습수-초기 대야인 교린책의 일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 1964, 「조선전기 향화야인의 수직성격고」, 『사간』 2; 이현희, 1964, 「朝鮮前期 來朝野人の 政治的 待遇에 對하여」, 『사학연구』 18; 이현희, 1964, 「조선전기 유경시위야인고-대야인기미책 일단-」, 『향토서울』 20; 이현희, 1966, 「조선전기 야인의 誘京綴懷第巧」, 『일산 김두중박사 회수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이현희, 1967, 「조선시대 북방야인의 사회경제사적 교섭고-대야인교섭정책의 배경-」, 『백산학보』 3; 이현희, 1971, 「조선왕조시대의 북평관 야인-그 수무책 일반-」, 『백산학보』 11; 이현희, 1977, 「朝鮮王朝의 向化野人 交考-接待問題의 用例-」, 『연구논문집』 10,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현희, 1982, 「대여진무역-대야인 교섭정책의 배경」, 『한국사론』 11; 유봉영, 1973, 「王朝實錄에 나타난 李朝前期의 野人」, 『白山學報』 14.

그렇지만 이러한 통교체제는 유력 여진세력이 다른 세력의 인신 등을 빼앗아 여러 개의 인신을 소유하게 되면 그 만큼 여러 차례의 통교가 가능해짐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建州衛가 건주분위·건주좌위·건주우위의 소위 ‘建州三衛’로 분화된 이유 역시 명에서 받은 인신을 둘러싼 ‘衛印爭奪’이 원인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에서는 여진과의 통교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변경에서 직접 여진인들의 세력 강약을 조사하기도 하고 내조하는 여진인들에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端宗實錄』 3년 3월의 己巳條이다.²⁾ 여기에는 여진인 8백여 명에 대한 名單 및 宗族, 勢力 等級, 居住地, 管下人數, 官職名 및 親族 關係 등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고, 두만강유역 5진 부근에 거주하는 여진인 부락의 수와 家口數, 壯丁數까지 나타나고 있다.³⁾

하지만 이 기록은 본래 먼 거리에 거주하는 火刺溫·愁濱江·具州 등의 兀狄哈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려는 의도를 충족하지 못한 채 5진 부근에 거주하는 여진인들로 한정되었다. 조선에서는 두만강 유역에 5진을 설치함으로써 먼 지방에 거주하는 울적합과의 직접 통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통교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이들의 세력 강약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들 울적합과의 직접 통교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僞使’, 즉 ‘通交違反者’⁴⁾의 발생이었다.⁵⁾ 울적합 등은 명의 衛所名을 거짓으

2) 『端宗實錄』 권13, 3년 3월 己巳.

3) 한성주, 2007(a), 두만강지역 여진인 동향 보고서의 분석-『端宗實錄』 기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6 참고.

4) 僞使란 “제3자가 어떤 通交名義를 사칭해서 파견하는 허위의 使節(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に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697, 1쪽)”, “제3자가 어떤 사람(실재하지 않아도 좋음)의 명의를 빌려서 사절을 파견하여 무역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거짓의 외교사절(橋本雄, 2004, 「宗貞國의 博多出兵과 僞使問題-朝鮮遣使 畚論의 再構成을 위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0, 52쪽)”, “조선 왕

로 만들거나, 印信을 僞造하거나, 심지어 元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書契를 가져오거나, 아예 인신이 찍혀 있지 않은 서계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편승해 경제적 목적을 가진 여진인들이 울적함을 詐稱하여 조선에 오기도 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조선과 명에서 준 인신 및 임명장 등을 위조·매매·대여·획득하거나, 여진의 유력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조선이 정한 통교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위 ‘위사’의 발생배경과 개념에 대한 연구는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측 ‘위사’에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⁶⁾ 따라서 본 논문은 여진과 관련해서 발생한 ‘위사’를 소개하는 동시에, 위사의 발생 배경, 사례와 유형, 조선의 대응과 처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위사’의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가 정식으로 통교를 허가한 자 이외의 제3자가 마치 정규 사절인 것처럼 가장하고 버젓이 통상 무역을 행하는 자(田代和生·六反田豊·吉田光男·伊藤幸司·橋本雄·米谷均, 2005, 「僞使」,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중·근세사 일본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9쪽), “名義 사칭, 가공인물, 書啓僞造를 포함해 朝鮮의 通航許可의 형식을 지참하지 않은 使節(신동규, 2005, 《조선왕조실록》 속의 日本國王使와 僞使」,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78쪽)”을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짓의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를 위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들의 성격 및 도항목적에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통교위반자’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한문중, 2005(a),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 처리,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24~225쪽 및 2005(b), 「僞使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중·근세사 한국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5쪽)”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사’ 및 ‘통교위반자’를 병행 또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5) 한성주, 2007(a), 앞의 논문, 참고.

6) 특히 일본측 연구자에 의한 위사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다분히 일본의 시각에서 위사를 바라보고 있는 점은 위사의 개념 및 실태, 조선의 대응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위사관련 연구성과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중·근세사 한국편, 일본편』, 참고).

I. 5鎮 설치와 女眞 僞使의 발생

조선 건국 직후 일본과의 최대 현안 문제는 倭寇 禁壓이었다. 조선은 무로마치 막부에 사신을 보내어 왜구 금압을 요청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왜구 격퇴 등의 무력적 방법 외에도 일본의 중소영주를 개별적·다원적으로 접촉하면서 왜구를 평화적인 통교자로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419년(세종 1) 對馬島 정벌 이후 對馬島主와 癸亥約條를 맺음으로써 일본과의 通交體制를 정비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⁷⁾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는 조선국왕과 일본국왕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對等交隣과 일본의 기타 중소영주 등을 통교체제 속에서 관계를 맺는 羈縻交隣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다원적·중층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⁸⁾

북방의 여진 또한 元·明교체기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靉都里·兀良哈·兀狄哈 등이 南下하였고, 이들은 土着女眞과 함께 지금의 요동 및 滿洲, 압록강·두만강 유역 등에 산재하고 있었다. 太祖 李成桂는 東北面 출신으로서 여진의 大小酋長을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조선 건국 초기에는 여진과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다. 그러나 여진을 둘러싼 명과 조선의 각축은 鄭道傳을 중심으로 한 요동정벌계획으로 표면화되기도 하였고, 동북면 10처 인민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⁹⁾

특히 명 成祖는 적극적인 여진 經略을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黑龍江

7) 한문중, 1996,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3쪽.

8) 손승철,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63쪽(2006,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9)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112~113쪽; 173~178쪽.

부근의 여진을 招撫하여 몽골 세력을 견제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두만강 부근의 여진을 초무하여 조선을 견제하는 것이었다.¹⁰⁾ 둘 다 여진 衛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명은 1409년(조선 태종 9)까지 115개의 여진 위소를 설립하였다.¹¹⁾ 그렇지만 여진 위소의 설치하는 명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여진의 대소추장을 그대로 위소관직에 임명하고 인신과 임명장인 勅書를 수여하는 일종의 授職行爲에 지나지 않았다.¹²⁾

이 과정에서 조선은 명으로부터 동북면 10처 인민의 귀속을 인정받았지만, 오도리의 대추장 동맹가침목아의 명 입조를 막지 못함으로써 두만강 유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鏡城·慶源의 무역소를 폐쇄하고 1410년(태종 10) 毛憐衛 정벌을 단행하여 明官職을 받은 8명의 여진인 指揮를 참살함으로써 두만강 유역을 조선의 세력권에 묶어 두려 하였다.

이후 조선과 명의 관계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여진을 둘러싼 조선의 정책 또한 정벌과 회유를 통해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藩籬화시켜 복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¹³⁾ 조선 북방에 거주하는 여진세력은 종족별로는 주로 오도리·올랑합·올적합·토착여진이었다. 이들은 통일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부족 단위로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조선은 역시 이들 각 부족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진인들은 주로 경제적

10) 박원호, 1991, 「永樂年間 明과 朝鮮間의 女眞問題」, 『아세아연구』 85, 238~239쪽 및 1995,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62쪽; 한성주, 2007(b), 「朝鮮初期 朝·明 二重受職女眞人の 兩屬問題」, 『조선시대사학보』 40, 9쪽.

11) 박원호, 1995, 앞의 논문, 262쪽.

12) 한성주, 2007(b), 앞의 논문, 9쪽.

13) 서병국, 1990,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국사관논총』 14, 138~139쪽.

목적으로 來朝하였는데, 조선은 朝貢과 回賜를 바탕으로 한 통교정책을 통해 여진의 내조를 받아들여 여진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勢力의 強弱에 따라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는 授職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에 복속시키려 하였다.¹⁴⁾

여진인들은 명의 위소관직 및 조선의 관직을 수여받음으로써 명과 조선에 通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압록강·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은 명관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리적·경제적 특성상 조선에 끊임없이 내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관직과 조선관직을 이중으로 수여받는 여진인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⁵⁾

여진인들은 경제적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였는데, 조선은 이에 대해 여진 정벌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세종대 이루어진 두 차례 건주위 李滿住에 대한 婆猪江 정벌은 4郡 설치의 계기가 되었으며, 會寧지방에 거주하던 오도리 童猛哥帖木兒의 패망으로 6鎭을 설치하게 되었다.¹⁶⁾ 세종이 6鎭을 설치한 이유는 동맹가첩목아가 거주하던 회령지방은 본래 조선의 국경 안의 땅으로 祖宗이 대대로 지켜오던 곳인데, 동맹가첩목아가 그곳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번리가 되기를 청하였다가 패망하므로 賊人에게 점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¹⁷⁾

6鎭 중 慶源, 慶興, 穩城, 鍾城, 會寧의 5鎭은 두만강 유역을 둘러싸면서 설치되었는데, 5鎭 설치 이후 홀라운 울적함의 직접 통교가 증가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오도리의 대추장 동맹가첩목아를 內地의 사나운 울

14) 한성주, 2006, 「조선초기 受職女眞人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6, 95~96쪽.

15) 한성주, 2007(b), 앞의 논문, 10쪽.

16) 4郡은 1433년(세종 15) 慈城郡을 시작으로 1443년(세종 25) 虞芮郡을 설치함으로써, 6鎭은 1434년(세종 16) 鍾城鎭을 시작으로 1449년(세종 31) 富寧鎭을 설치함으로써 완료되었다(방동인, 1997,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일조각; 김구진, 1995,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참고).

17) 『世宗實錄』 권62, 15년 11월 戊戌; 庚子; 12월 壬戌; 권63, 16년 1월 丙午.

적합의 침입을 막아주는 번리로 인식하였으나¹⁸⁾ 동맹가침목아가 꽤망하게 되고 그곳에 조선이 직접 5진을 설치하자 먼 지방에 거주하는 홀라운 울적함의 직접 통교가 가능해지고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조선과 직접적인 통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과 통교상 필요한 명이나 조선에서 받은 印信이 찍힌 書契 또는 明官職을 받은 勅書, 조선의 告身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조선에서는 다른 여진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계나 고신 등이 없는 경우 여진 세력의 강약을 파악하여 接待하거나 上京을 허락하기도 했지만, 홀라운 울적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조를 원하는 홀라운 울적함 모두를 상경시키고 접대도 동일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예전부터 통하지 않던 오랑캐가 처음으로 와서 誠心으로 服從하였으니, 그 뜻이 가히 취할 만한 기쁜 일이고, 비록 그 속 마음이 귀순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큰 나라(조선)가 字小之心으로서 박대할 수 없으며, 뒷날 往來가 분주하는 弊端이 있더라도 흠치고 도둑질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接待를 후하게 하도록”¹⁹⁾ 함으로써 이들의 내조를 받아들였다. 즉 홀라운 울적함의 내조를 받아들인 이유는 事大字小의 개념인 큰 나라가 작은 나라(세력)를 사랑해주는 字小之心²⁰⁾과 변경의 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홀라운 울적함의 내조를 받아들이고 후대하자 이들의 내조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1437년(세종 19) 7건, 1438년(세종 20) 22건, 1439년(세종 21)에는 65회나 되고, 이 기간 동안 총 94회나 되었다(【표 1】).²¹⁾

18) 『太宗實錄』 권9, 5년 3월 己酉; 『世宗實錄』 권45, 11년 9월 丁卯; 권62, 15년 11월 庚子.

19) 『世宗實錄』 권79, 19년 9월 丙申.

20) 여진에 대한 ‘字小’에 대해서는 한성주, 2009, 「朝鮮前期 ‘字小’에 대한 고찰-對馬 島 倭人 및 女眞 勢力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33, 참고.

21)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舍, 293~300쪽.

【표 1】 1437~39년 사이 홀라운 울적합의 내조 횟수

서 기 (왕 력)	1437년 (세종 19)	1438년 (세종 20)	1439년 (세종 21)	계
내조 횟수	7	22	65	94

* 河内良弘,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 1992, 293~300쪽을 바탕으로 작성.

【표 2】 세종대 여진이 조선에 입조한 횟수

종족	토착여진	울랑합	알타리 (오도리)	諸種울적합	계
내조 횟수	2	117	102	128	349

* 김구진, 1995,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350쪽 <표 3 여진이 조선에 입조한 횟수>에서 『세종실록』 부분만을 발췌함.

【표 2】는 세종대 여진이 조선에 입조한 횟수인데, 토착여진이 2회, 울랑합이 117회, 오도리 102회, 제종울적합 128회로 총 349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 제종울적합이 내조한 128회 중에는 1437~39년 사이인 3년 동안 홀라운 울적합의 내조횟수인 94회가 포함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홀라운의 내조 횟수가 상당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홀라운의 내조 횟수는 전체 세종대 여진의 내조 횟수에 약 26.93%를 차지할 정도이므로 세종이 홀라운의 내조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후대하면서 내조가 급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홀라운의 내조 급증은 조선에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하나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였다. 기존 여진인들의 내조 이외에 홀라운 울적합의 내조를 받아들인 데다가 이들을 후대하자 홀라운의 내조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驛路의 폐해를 불러왔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력의 강약에 따라 접대의 차등을 두는 기존 방

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 접대를 동일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이다.²²⁾

다른 하나는 바로 ‘女眞 僞使’ 또는 ‘通交違反者’의 발생이었다. 즉 조선과 명에서 수여해 준 인신과 관직을 가지지 못한 홀라운 올적합이 조선과의 통교를 위해 취한 방법은 크게 衛所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거짓으로 만들거나, 인신을 위조하여 서계를 만들거나, 元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서계를 사용하거나, 인신이 없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었다.²³⁾ 특히 조선에서 이들의 眞僞를 분간하지 않고 접대하자, “소식을 듣고 서로 이끌어서 거짓 문서를 꾸며 가지고 서로 꼬리를 이어서 올 정도”였다.²⁴⁾ 게다가 다른 여진인조차 賞賜를 목적으로 홀라운이라고 거짓으로 이름을 속여 내조하기까지 이르렀다.²⁵⁾

조선에서는 이러한 홀라운 올적합에 대해 인신이 있는 서계를 가진 자는 예전대로 올려 보내게 하고, 인신이 없는 서계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함길도 도절제사가 올려 보내지 말고, 현지에서 후하게 대접하고 토산물을 주어 돌려보내도록 하였으며, 비록 인신이 없을지라도 부득이 접견할 자는 요량하여 적당하게 올려 보내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다.²⁶⁾ 그러다가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명백하게 점검하여 인신 있는 서계를 가진 자는 올려 보내고,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형편에 따라 물건을 주어서 돌려보내도록 하였고,²⁷⁾ 倭長이 친히 오

22) 조선에서는 홀라운 올적합이 내조하였을 때를 이용하여 그들의 居住 地域, 地理, 倭長의 姓名과 職質의 高下, 族屬과 部類의 強弱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이것을 북방의 모든 종류의 여진인들에 확대하여 일본의 왜인들처럼 그 등급을 나누어 전적에 기록하여 그 接待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世宗實錄』 권78, 19년 9월 甲辰; 권80, 20년 2월 乙卯; 庚申; 권82, 20년 8월 乙丑).

23) 『世宗實錄』 권85, 21년 4월 甲辰; 권87, 21년 10월 癸未.

24) 『世宗實錄』 권87, 21년 10월 癸未.

25) 『世宗實錄』 권110, 27년 11월 壬申.

26) 『世宗實錄』 권85, 21년 4월 甲辰.

27) 『世宗實錄』 권87, 21년 10월 癸未.

더라도 隨從하는 자를 2~3인만, 서계를 가지고 오더라도 1명만을 상경시키고, 그 외에는 절제사가 임시응변으로 타일러서 머물러 두었다가 후대하여 돌려보내도록 하였다.²⁸⁾

그러나 인신이 있는 서계를 지닌 것으로 통교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홀라운 올적합은 이미 인신을 위조한 서계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먼 지방의 홀라운이 이 방법으로 통교를 시도했다면 가까이 거주하면서 조선의 통교제도에 익숙한 다른 여진인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즉 문서를 기준으로 하는 통교정책은 얼마든지 그 문서의 위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더구나 조선은 수직제도를 이용하여 조선에서 관직을 받은 여진인들에게 준 임명장인 告身 자체로 통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신을 고치거나 차용 또는 획득하여 그것을 증빙삼아 조선에 내조할 경우 그것을 면밀히 대조하거나 점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특히 건국 직후부터 시작된 여진에 대한 授職은 세종대에 이르게 되면 두만강·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²⁹⁾ 『단종실록』 3년 3월 己巳條에 나타난 여진인 800여 명 중 조선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247명, 명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70명으로 두만강 유역 5진 부근에만 총 317명의 여진인들이 조선과 명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⁰⁾ 따라서 조선 건국 후 약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선에 통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여진인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문서로 된 고신을 5진의 변장에게 보여주고 대조·점검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통교정책도 한계가 있었

28) 『世宗實錄』 권87, 21년 10월 己丑.

29) 한성주, 2006, 앞의 논문, 참고.

30) 한성주, 2007(a), 앞의 논문, 참고.

고, 홀라온 올적합의 위사발생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¹⁾

II. 女眞 僞使의 사례와 유형

홀라온 올적합의 통교에서 시작된 여진 위사의 발생은 점차 다른 여진 종족에게도 파급되었다. 조선에서 처음 내조하는 홀라온을 우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내조가 급증하면서 기존 통교방식을 위반한 자들이 나타났고, 홀라온을 사칭한 여진인들이 생겨났던 것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여진인들 중에는 조선의 통교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여진 위사’ 또는 ‘통교위반자’의 사례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印信을 빌려 쓴(借著) 경우

1439년(세종 21) 홀라온 올적합의 撒力衛 都指揮 沙乙工介, 木忽刺衛 지휘 毛當介의 서계는 克默而河衛의 인신을 빌려 쓴 것으로 되어 있다.³²⁾

31) 여진에 대한 통교책을 인신과 고신을 5진의 변장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한 것은 당시 여진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여진 분열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왜인통교책과는 다른 점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조선의 왜·야인에 대한 통교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2) “其後撒力衛都指揮沙乙工介書契及木忽刺衛指揮毛當介書契借著克默而河衛印信”(『世宗實錄』 권87, 21년 10월 癸未).

사을공개와 모당개가 언제 조선에 내조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세종이 함길도 도절제사 金宗瑞에게 흘라온 올적합의 내조와 관련된 폐단, 즉 경제적인 문제 및 위사 문제와 관련되어 전지한 내용 중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大明會典』 및 『明史』를 보면 명은 흑룡강 일대의 여진을 초무하기 위해 奴兒干都司³³⁾를 설치하고 여진위소 384개를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撒力衛는 1404년(명 永樂 2), 木忽刺河衛, 克默河衛는 1408년(명 영락 6)에 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온다.³⁴⁾ 목홀자위와 목홀자하위, 극목이하위와 극목하위는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위소는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을공개가 도지휘, 모당개가 지휘라는 명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관직을 명으로부터 받았다면 당연히 인신과 칙서를 받았을 것이므로 극목이하위의 인신을 빌려 썼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신분조차도 의심케 한다.

2. 元나라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경우

1439년(세종 21) 역시 흘라온 올적합의 湖寧衛 지휘 於時應巨·加弄巨·阿吾 등은 元나라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서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다.³⁵⁾ 이들 또한 언제 조선에 내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원

33) 奴兒干都司는 중국에서의 土木의 變 이후 오이라트의 영향력이 建州衛 지역까지 미치게 되면서 폐지되었고(남의현, 2005,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都司의 危機』, 『만주연구』 3, 146쪽), 명 宣德 이후부터는 노야간도사의 형식적 기능조차 소멸되었다(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530~539쪽). 더 구체적으로는 명은 1435년(명 선덕 10, 조선 세종 17)부터는 노야간도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하였다(蔣秀松·王兆蘭, 1990, 『關於奴兒干都司的問題』, 『民族研究』 第6期, 참고).

34) 『大明會典』 권125, 城隍二 屬夷 東北諸夷; 『明史』 권90, 志66 兵2 衛所 班軍.

35) “湖寧衛指揮於時應巨加弄巨阿吾等著元朝蒙古印信”(『世宗實錄』 권87, 21년 10월

은 이미 명에 의해 쫓겨나 초원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이라트 등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기도 하여 몽고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홀라운 울적합이 몽고의 인신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元朝蒙古印信’이라고 한 것을 보면 명에 의해 위소를 설치 받은 홀라운 울적합이 명이 준 인신이 아닌 이미 패망한 원나라의 인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호령위 자체도 이 사례 이외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명사』, 『명실록』, 『대명회전』 등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衛名을 거짓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명확하진 않다.

3. 다른 사람의 이름을 詐稱(冒名)한 경우

1442년(세종 24) 5월에는 홀라운의 지휘 加弄介가 보낸 아들 忘家 등 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³⁶⁾ 이들을 둘러싼 위사 문제가 발생하였다. 4인의 이름은 가룽개가 보낸 親子 망가와 그 伴人 仇赤羅, 毛都好가 보낸 아들 波下多와 그 반인 也時였으며, 이들을 예조에서 饋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向化한 이만주의 管下인 護軍 浪得里卜이 ‘망가는 가룽개의 아들이 아니고 일찍이 본국(조선)에 入寇한 홀라운 沙籠介의 둘째 아들 多籠介인데, 지금 이름을 변경하여 내조한 것’이라고 예조에 密告하였다.³⁷⁾

낭득리복은 건주위 이만주의 관하로 있다가 조선으로 와서 항화하였

癸未).

36) 『世宗實錄』 권96, 24년 5월 庚辰.

37) “忘家不是加籠介之子乃嘗入寇本國邊境忽刺溫沙籠介第二子多籠介也今變名來朝矣”(『世宗實錄』 권95, 24년 5월 己丑).

는데, 이만주의 관하로 있을 당시 다룽개가 아버지 사룽개를 인도하여 이만주가 있는 곳에 와서 화친을 맺는 것과 이만주와 함께 사냥하는 것을 수종하였기 때문에 다룽개가 망가로 이름을 속인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³⁸⁾ 그리고 이들을 의금부에 가두고 推問한 결과 같이 왔던 4사람의 供辭가 한결같지 않았고, 그 중 파하다는 망가에 대해 ‘가룽개의 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사룽개의 둘째 아들 無同介인데, 지금 가룽개의 아들 망가라고 이름을 거짓으로 대고[冒名] 온 것’이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망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여 내조하였음이 분명해졌다.³⁹⁾

한편 홀라온 올적합이 아닌 오도리 종족 중에서도 홀라온이라 사칭하고 내조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 해인 1442년(세종 24) 10월에는 庚申年(1440년, 세종 22)에 도망해 간 吾都里 弓乙主의 義子인 也吾乃가 홀라온 帶陽可라고 이름을 거짓으로 속이고 나온 것이다.⁴⁰⁾ 야오내의 시도는 邊境에서 적발되어 상경하지 못한 채 함길도 도절제사에 의해 구류되었고 추고 당하였다.⁴¹⁾ 그리고 1445년(세종 27) 예조에서는 여러 여진 종족들의 내조 횟수를 정하도록 아뢰었는데, 그 중 홀라온 올적합의 내조를 1년에 5번으로 제한한 이유는 홀라온의 땅은 동떨어져서 진짜 친히 조회하는 자가 드물고, 여진인이 거짓으로 추장의 아들·사위·형제·조카[子·婿·弟·姪]라 사칭하고 이름을 거짓으로 대어[冒名] 賞賜를 요구하므로, 그 내조하는 바가 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⁴²⁾

따라서 조선에서 홀라온의 내조를 후대하자 다른 여진 종족 중에서

38) 『世宗實錄』 권95, 24년 6월 辛卯; 己亥.

39) 『世宗實錄』 권95, 24년 6월 甲午; 乙未; 丁酉; 己亥. “波下多獨曰此是沙籠介第二子 無同介也今以加籠介之子忘家冒名而來”(『世宗實錄』 권95, 24년 6월 己亥).

40) “庚申年逃去吾都里 弓乙主義子也吾乃冒忽刺溫帶陽可之名出來故拘留推考”(『世宗實錄』 권98, 24년 10월 乙巳).

41) 『世宗實錄』 권98, 24년 10월 乙巳.

42) 『世宗實錄』 권110, 27년 11월 壬申.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홀라온이라 사칭하고 거짓으로 이름을 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거짓으로 이름을 댄 경우 실제 존재한 사람인지, 또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1485년(성종 16)에도 삼위의 사송이라 사칭한 李昌阿 무리에 대해서도 ‘冒名’이라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한 것을 알 수 있다.⁴³⁾ 이들은 사송 및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고신을 빌리는 등 두 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유형(두 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으로 설정하여 뒤에 후술하기로 한다.

4. 여진 衛所의 使送(使人)을 詐稱한 경우

건주위는 이만주의 祖父 於虛出이 명으로부터 建州衛指揮使에 임명되면서 위소가 설치되었고, 이후 동맹가첩목아가 입조하면서 건주좌위를 개설 받았다. 조선에서는 동맹가첩목아 패망 후에 그 아들인 童倉과 이복동생인 凡察을 회령지방에 머물게 하여 조선의 번리로 삼으려 하였으나 이들이 이만주에게로 도망하였고,⁴⁴⁾ 이들 사이에 건주좌위의 爲僞問題를 둘러싼 소위 ‘衛印爭奪’이 발생하자 명 英宗은 할 수 없이 左衛와 右衛로 分衛하였다.⁴⁵⁾ 이로써 이만주의 建州本衛, 동창의 建州左衛, 범찰의 建州右衛가 형성되었고, ‘建州三衛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⁴⁶⁾

세조가 건주삼위를 우대하여 이들의 내조를 위해 이례적으로 평안도

43) 『成宗實錄』 권178, 16년 윤4월 丁未; 권179, 16년 5월 甲寅.

44) 박원호, 1992, 宣德年間(1425~1435) 明과 朝鮮間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88, 25쪽; 한성주, 2007(b), 앞의 논문, 12~14쪽.

45) 서병국, 1972, 「凡察의 建州右衛研究」, 『백산학보』 13, 34쪽.

46) 김구진, 1995, 앞의 논문, 348쪽.

의 길을 개방하자, 이만주의 아들인 建州衛都督 李古納哈, 李豆리가 내조하고, 建州左衛都督 童倉과 그 아들 知方哈이 내조하였다.⁴⁷⁾ 특히 세조는 건주위도독 이고납합과 건주좌위도독 동창이 내조하자 이들에게 각각 中樞院事의 관직을 수직하고 祿까지 주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명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⁴⁸⁾

조선과 세조대 다시 재개된 건주삼위와의 교섭은 명의 간섭으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성종대 들어와서도 건주삼위의 使人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건주삼위 추장이 직접 보낸 사인 및 親屬들에 한해서는 上京을 허락기도 하였는데, 좌위에 속하면서 우위의 사인으로 사칭하거나 건주삼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건주삼위의 使送을 사칭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1484년(성종 15)에는 향화한 검사복 金波乙多尙이 右衛 추장 甫花土의 사송이라고 칭한 馬阿多右가 左衛 추장 吐老(土老)의 휘하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마아다우가 다른 衛의 사송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⁴⁹⁾ 이 후 조선에서는 삼위의 추장 자제는 평안도를 경유하여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고, 자제가 아니면 영안도 후문으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으나, 삼위의 사람들이 추장의 자제가 아니면서 거짓 자제라고 일컫고 내조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도 하게 되었다.⁵⁰⁾

47) 『世祖實錄』 권13, 4년 8월 丙辰; 권14, 4년 9월 辛亥; 권16, 5년 4월 丁卯.

48) 『世祖實錄』 권13, 4년 8월 癸亥; 권14, 4년 10월 辛未; 권16, 5년 4월 丁卯(이와 관련하여 명과의 외교적 마찰에 관해서는 한성주, 2007(b), 앞의 논문, 21~25쪽 참고).

49) “向化兼司僕金波乙多尙來啓曰, 甫花土, 臣之舅也, 臣幼少時, 鞠於其家, 年至二十餘, 始出來, 右衛之事, 臣悉知之, 今來馬阿多右, 非甫花土使送, 乃左衛麾下也”(『成宗實錄』 권168, 15년 7월 戊申).

50) 『成宗實錄』 권171, 15년 10월 辛未.

5. 官敎를 僞造, 借用, 賣買하여 내조하는 경우

1) 官敎를 僞造하는 경우 -관교를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詐僞]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선의 여진에 대한 수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관직을 준 임명장인 告身이 조선에 내조할 수 있는 일종의 통교권을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위사 내지는 통교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서로 된 고신은 이름을 고쳐 쓰거나, 관직명을 바꾸거나 하는 행위 등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1485년(성종 16)에 내조한 奴木哈이 가지고 온 관교는 成化 19年(1483, 성종 14)에 만든 것인데, ‘保功將軍 上護軍’의 직함이 적혀 있었다.⁵¹⁾ 예조에서는 보공장군에 응하였다면 상호군에 제수될 이치가 없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바르고 문질러서[塗擦] 고쳐 쓴 것[改書]이라 판단하였다.⁵²⁾ 즉 보공장군은 從三品에 해당되는 품계이고, 상호군은 正三品 堂下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의 품계가 맞지 않는다. 두 개의 품계가 서로 맞으려면 ‘禦侮將軍 上護軍’ 또는 ‘保功將軍 大護軍’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목합이 가지고 온 관교는 대호군을 상호군으로 개서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 鄭蘭宗은 ‘彼人(野人)들이 영안도 5진에 살면서 모두 서울에 와서 조회하는 것에 급하여 남의 관교와 告身을 매매해서 바르고 문질러서 고쳐 쓰는 자가 자주 있다’⁵³⁾고 하여 여진인들이 조선의 관교와 고신을 매매하고 위조하는 행위가 매우 많았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1496년(연산군 2)에도 火刺溫兀狄哈 林大가 내조하여 中樞의 관직을

51)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壬戌.

52) “且奴木哈所齎官敎則成化十九年所成, 而曰, 保功將軍上護軍, 若應保功, 則無除上護軍之理, 此必塗擦而改書也”(『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壬戌).

53)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乙亥.

받았다고 사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⁴⁾ 임대가 조선에 내조하면서 어떤 관교나 고신을 제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상경하여 중추의 관직을 받았다고 사칭한 것으로 볼 때 위조된 관교나 고신을 제시하고 서울까지 상경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1530년(중종 25)에 내조한 大刺濫 孟知介⁵⁵⁾ 斜老 등은 1525년(중종 20)에 내조하였다가 中樞의 관교를 빼앗기고 司猛의 관교로 낮추어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관교를 상고해 보니 나이가 틀리고 간사하게 위조[奸僞]하였기 때문이었다.⁵⁶⁾ 그런데 당시 올라온 야인들의 관교들도 모두 考閱해 보니 착오된 것이 많아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城底人(城底野人)들 중에는 관교가 잘못되어 조선에 빼앗긴 자들이 많다고 하여 관교를 위조하는 행위가 深處의 여진인들 뿐만 아니라 6진 성저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⁵⁷⁾

2) 官敎 또는 告身을 빌리거나 賣買해 가지고 오는 경우

조선에서 여진인들에 수여한 告身(官敎)은 조선과 통교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 매매가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1485년(성종 16)에 내조한 野人 元多沙는 己卯年(1459, 세조 5)에 果毅將軍 上護軍의 관직을 받

54) “火刺濫 兀狄哈林大詐言曾受中樞，禮曹廉得其狀，乃授司猛”(『燕山君日記』 권13, 2년 3월 辛巳).

55) 孟知介는 兀狄哈를 말하며, 大刺濫은 忽刺濫을 지칭하는 것 같다. 따라서 大刺濫 孟知介는 忽刺濫 兀狄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6) “大刺濫 孟知介 斜老等，乃深處野人，非城底彼人之類，去乙酉年上來時，考其官敎，年歲錯誤，且有奸僞，奪其中樞官敎，而降授司猛”(『中宗實錄』 권67, 25년 2월 辛未).

57) 『中宗實錄』 권67, 25년 2월 辛未.

58) 여기에는 다른 여진인의 고신을 탈취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았는데, 그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였다가 癸卯年(1483, 성종 14)에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면서는 ‘아버가 司正 大陽介’라 한 적이 있었다.⁵⁹⁾ 그리고 1485년(성종 16)에 내조하여서는 기묘년(1459, 세조 5)의 官敎를 가져와서는 ‘아버가 上將 愁加應巨’라고 하였기 때문에 禮曹에서는 지금 온 자가 남의 官敎를 빌렸거나 훔쳐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다.⁶⁰⁾ 즉 세 번 내조하여 官職을 받는 동안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각각 다른 말을 하였고, 내조하면서 높은 官職을 받은 官敎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官職을 받은 官敎를 제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또한 1485년(성종 16) 12월에는 達乙花가 達魯花哈의 官敎를 빌린 것을 승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¹⁾ 그는 빌린 官敎를 본주인[本主]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본주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돌려주기를 간청하였고, 본주인 달로화합이 이 官敎가 없으면 뒷날 내조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돌려주게 하였다.⁶²⁾

1490년(성종 21)에 내조하였던 兀良哈 奴木哈과 刺力答 등은 同類人의 告身을 賣買해 가지고 왔다가 발각되었다.⁶³⁾ 이때의 노목합이 전에 관

59)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壬戌(元多沙가 상호군을 제수 받은 것은 『世祖實錄』 권18권, 5년 10월 己巳條에서 확인되지만,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된 것은 『成宗實錄』에 보이지 않는다).

60) “今來野人元多沙, 去己卯年來朝, 授果毅將軍上護軍, 其時則曰, 不知父名, 癸卯年又來朝, 授折衝僉知, 則曰, 父司正大陽介 今則又將己卯年所除上護軍官敎而來曰, 父則上將愁加應巨, 此必借竊人官敎而來也”(『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壬戌).

61) 達乙花가 원다사와 함께 내조한 것인지, 또 어떻게 官敎를 빌린 것을 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진 않는다(“野人達乙花已服借達魯花哈官敎事 … 此官敎若不還本主, 則本主憤, 必殺我矣, 懇請還給, 且野人官敎, 令邊將無遺考閱後令上送事, 今已立法, 達魯花哈若無此官敎, 則後不得來朝矣, 請還給 從之”[『成宗實錄』 권186, 16년 12월 戊戌]).

62) 위와 같음.

63) “兀良哈奴木哈, 刺力答等, 買其同類人告身而來, 事覺, 禮曹收其告身”(『成宗實錄』 권237, 21년 2월 戊申).

교를 위조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인할 순 없지만, 조선에서 관직을 수여한 告身이 여진인들 사이에서 매매가 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진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고신을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화인으로 訓練院 習讀官이 된 동정례는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6鎮 城底의 幹朶里 등이 국가의 編氓이 되었으나, 그 사이에는 간사한 무리가 있어서 他人의 고신을 사서 이름을 속이고 職을 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國家에서 이런 무리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며, 이 무리들을 살살이 찾아내고 한 사람을 처벌하여 그 나머지를 징계하면 冒濫하는 폐잔이 제거될 것’⁶⁴⁾이라 하고 있다. 이후 동정례는 몇 년 후에도 ‘野人이 타인의 관교를 몰래 사서[潛賣] 祿을 받는 자를 적발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⁶⁵⁾을 주장하고 있었다.

1526년(중종 21)에는 지난해에[往年]에 여진인들이 上京하였을 때 명백하지 않은 관교(고신)는 회수해서 빼앗은 것이 많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진인들의 원망이 일어난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였다.⁶⁶⁾ 다음해인 1527년(중종 22)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城底野人들이 가지고 온 관교를 검열하여 8인의 고신을 追奪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者에 禮曹에서 (城底)野人들이 가지고 온 官教를 살폈는데 年歲와 居處가 틀린 사람 8인의 (관교를) 追奪했었습니다. … 穩城府使의 牒呈에 ‘예조의 移文에 따라 兵房과 일을 잘 아는 通事를 시켜 성저야인들의 관교를 推闕했더니, 70여 명 가운데 3~4인의 관교만이 옳은 것이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부실했습니다.’⁶⁷⁾

64) 『燕山君日記』 권12, 2년 2월 壬子.

65) 『燕山君日記』 권40, 7년 5월 乙卯.

66) 『中宗實錄』 권57, 21년 11월 壬辰.

즉 상경한 城底野人들이 가지고 온 관교 중 나이와 거처가 틀린 것이 있어서 8인의 관교를 추탈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조에서는 연산군대에 향화인 동청례가 아된 것과 같이, 온성부사로 하여금 온성진 성저야인의 관교를 추열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추열한 온성진의 성저야인 70여 명 중 3~4인의 관교만이 올바른 것이었고, 나머지는 부실한 관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부실한 관교란 위조, 차용, 매매하였던 관교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6. 두 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1485년(성종 16)에 삼위의 사송이라 사칭한 李昌阿는 사송 및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官敎를 빌리는 등 2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⁸⁾ 영안도를 통해 右衛 주장 토로의 휘하라 칭한 李昌阿 등이 상경 내조하였지만, 이들 역시 향화한 兼司僕 童淸禮가 삼위의 사송이 아니라 조선의 靑巖里에서 도망해 가서 檢天里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라고 밝힘으로써 삼위의 사송을 사칭한 것임이 밝혀졌다.⁶⁹⁾ 한편 이창아는 上護軍의 관직을 가진 것으로 내조하였는데, 이창아와 같이 내조한 자들은 7명이었다.⁷⁰⁾ 문제는 이들이 前年에 내조한 바 있고, 이름을 속여 가지고 다시 온 자도 있고, 나이가 젊으면서 老人의 官敎를 빌려가지고 온 자도 있었다는 것이다.⁷¹⁾ 더욱이 이창아가 상호군의 직책을 가진

67) 『中宗實錄』 권58, 22년 1월 己丑.

68) 『成宗實錄』 권178, 16년 윤4월 丁未; 권179, 16년 5월 甲寅.

69) “今者上來人, 雖稱土老麾下, 其實自靑巖里逃去而檢天里止接者, 其官敎亦皆借於他人者也”(『成宗實錄』 권178, 16년 윤4월 丁未).

70) 『成宗實錄』 권178, 16년 윤4월 癸未.

71) “李昌阿, 非三衛使送, 臣非傳聞, 素所熟知, 右人等有前年來朝而今又冒名復來者, 有年歲幼少而借老人官敎者, 詐稱三衛使送, 而以靑巖逃人刷還之事來說, 倨傲驕

것에 비해 25~6세로 밖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동청례의 고변뿐만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더욱 컸던 것으로 되어 있다.⁷²⁾

Ⅲ. 女眞 僞使에 대한 대응과 처리

그렇다면 여진 위사 또는 통교위반자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첫째, 조선에서는 여진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진인들에 대한 정보 파악은 그 세력의 강약을 파악해서 여진이 통교를 요청하여 오면, 세력의 강약에 따라 통교를 허락하거나 관직을 차등하여 수여하거나, 접대의 차등을 두거나 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진인들에 대한 정보 파악 시도가 세종대에 4군 6진을 설치하고, 홀라운 올적함의 내조가 증가하면서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⁷³⁾ 앞의 목적 이외에도 홀라운 올적함을 중심으로 한 통교위반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선에서는 홀라운 올적함이 내조하였을 때 이들이 머물던 館에 監護官이나 通事 등을 보내어 그들의 居住 地域, 地理, 酋長의 姓名과 職質의 高下, 族屬과 部類의 強弱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⁷⁴⁾ 그리고 이러한 정보 파악을 북방의 모든 종족의 여진인들에게도

務, 其爲欺罔, 莫甚於此”(『成宗實錄』 권179, 16년 5월 甲寅).

72) 李昌阿는 자신이 庚辰年(1460, 세조 6)에 내조할 당시 18세였고, 지금은 43세라 하였고, 山林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늙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成宗實錄』 권179, 16년 5월 乙卯).

73) 『世宗實錄』 권78, 19년 9월 甲辰; 권80, 20년 2월 乙卯; 庚申; 권82, 20년 8월 乙丑; 권90, 22년 8월 戊子; 권111, 28년 1월 戊寅.

확대하려 하였고,⁷⁵⁾ 이것은 『단종실록』의 소위 ‘여진인 인명기록’의 초석이 되었으며, 연산군대 만들어진 『西國諸蕃記』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⁷⁶⁾

1485년(성종 16)에도 삼위의 사송이라 사칭한 李昌阿 등의 경우 조선에서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후 조선에서는 내조하는 사람들의 世系와 族波 및 年歲를 자세히 기록하여 뒤에 참고하고 대비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여진의 통교위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여진에 대한 정보 파악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⁷⁷⁾

둘째, 여진인들에 대한 통교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여진인들의 내조를 제한한 것은 조선 초기부터 있어 왔다. 즉 여진인의 내조와 상경에 따른 조선의 경제적 부담, 역로의 피폐 등을 이유로 여진의 통교를 제한한 시도가 몇 차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413년(태종 13)에 10여 戶 이상을 거느린 자의 사송인 이외에는 赴京함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吉州·鏡城 등처에서 우대하여 돌려보내게 하였다.⁷⁸⁾ 1426년(세종 9)에는 여러 種族의 野人들 가운데 指揮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來朝할 만한 자를 가려서 1년에 1백 사람을 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邊將으로 하여금 관례를 삼도록 하기도 하였다.⁷⁹⁾ 1433년(세종 16)에도 頭領만 택하여 허락하되 연간 40~5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⁸⁰⁾ 倭長의 親朝할 때도 수종인을 2~3인만을 거느리게 하였고, 기타 書契 등을 가지고 오는 자는 1인으로 정하면서 그 외에는 都節制使가 임시응변으로 타일러서 머물러 두고 후대하여 돌려보

74) 『世宗實錄』 권78, 19년 9월 甲辰; 권80, 20년 2월 乙卯; 庚申.

75) 『世宗實錄』 권78, 19년 9월 甲辰; 권82, 20년 8월 乙丑.

76) 『端宗實錄』의 ‘여진인 인명기록’에 관해서는 한성주, 2007(a), 앞의 논문, 참고.

77) 『成宗實錄』 권179, 16년 5월 乙卯.

78) 『太宗實錄』 권25, 13년 1월 丙申.

79) 『世宗實錄』 권36, 9년 4월 丙子.

80) 『世宗實錄』 권63, 16년 1월 庚寅.

내게 하였다.⁸¹⁾ 1457년(세조 3)과 1458년(세조 4)에는 여진의 내조시 추장의 從者를 줄여서 상경케 하기도 하였으며,⁸²⁾ 1460년(세조 6)에도 우두머리 되는 酋長과 有功者를 골라 상경하게 하였다.⁸³⁾ 1473년(성종 5)에는 야인 상경을 1년에 12運을 넘지 못하게 하고, 1운의 경우에도 6~7명에 지나지 않게 정하기도 하였다.⁸⁴⁾ 한편 1554년(명종 9)에 만들어진 『故事撮要』에는 豐年에는 17운과 120인을 넘지 못하게, 凶年에는 12운과 90인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5진에서 보내는 運을 각각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⁸⁵⁾

여진 위사, 즉 통교위반자와 관련하여서는 1438년(세종 21)과 1445년(세종 27)의 통교 제한 조치가 주목된다. 1438년에는 홀라온 올적합 중에서 印信이 있는 서계를 지닌 자는 예전대로 상경시키고, 인신이 없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자는 함길도 도절제사가 올려보내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고 토산물을 주어 돌려보내게 정하였다.⁸⁶⁾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홀라온 올적합이 衛名을 사칭하고 인신이 없는 서계를 가진 자들이 연달아 조선에 내조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비록 인신이 없을 지라도 부득이 접견할 자는 요량하여 적당하게 올려 보내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홀라온 올적합의 유력자나 공로자의 경우에는 조선에서 정한 통교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445년(세종 27) 예조에서는 여러 여진 종족들의 내조 횟수를 정하도록 아뢰었는데, 그 중 홀라온 올적합은 1년에 5번만, 변경 가까이 사는 林阿車·弓末車·大小居·節南納·高說·高漆 등의 諸種 올적합은 1년

81) 『世宗實錄』 권87, 21년 10월 己丑.

82) 『世祖實錄』 권8, 3년 7월 庚寅; 권13, 4년 8월 丙辰.

83) 『世祖實錄』 권20, 6년 6월 辛未.

84) 『成宗實錄』 권47, 5년 9월 己卯.

85) 『故事撮要』 接待野人事例(豐年에는 회령 4運, 중성 4운, 온성 3운, 경원 3운, 경흥 3운 모두 120人, 凶年에는 회령 3운, 중성 3운, 온성 2운, 경원 2운, 경흥 2운 모두 90인을 올려 보내도록 되어 있다).

86) 『世宗實錄』 권85, 21년 4월 甲辰.

에 2번만 오도록 주청하였다.⁸⁷⁾ 홀라온 율적합의 내조를 1년에 5번으로 제한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홀라온 율적합을 사칭한 여진인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지만, 홀라온 율적합의 내조 역시 갑자기 끊을 수가 없으므로 1년에 5번 내조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⁸⁸⁾ 따라서 조선에서는 여진인들의 위사, 즉 통교위반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들의 통교를 제한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大國이 먼 지방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으로 용서하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1442년(세종 24) 홀라온 율적합을 사칭하였던 忘家의 경우 그 일행을 분리해서 망가와 야시는 남겨두어 구류하고, 파하다와 구적라는 먼저 돌려보내어 그들의 頭目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⁸⁹⁾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롱개가 자신의 아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는 서계를 보내고 나서야 망가(다롱개 또는 무동개)를 돌려 보내게 되었다.⁹⁰⁾ 가롱개 자신이 친히 와서 청한 것도 아니고, 가롱개의 아들이 아니라고 진술한 파하다도 병을 얻어 중태라는 이유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롱개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眞僞를 분별하기 어렵지만, 서계에 여러 종족이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⁹¹⁾

이 과정에서 망가를 극형에 처하여 국가의 법을 보여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禮曹와 黃禧의 주장에 따라 ‘큰 나라가 먼 지방 사람을 통치하고 포용하는 도량’으로서 용서하고 돌려보냈다.⁹²⁾ 그렇지만 망가에 대한 대우는 추장의 자제가 아닌 다른 홀라온의 예에 의거하여

87) 『世宗實錄』 권110, 27년 11월 壬申.

88) 위와 같음.

89) 『世宗實錄』 권95, 24년 6월 己亥.

90) 『世宗實錄』 권98, 24년 12월 癸巳.

91) 『世宗實錄』 권98, 24년 12월 癸巳.

92) 『世宗實錄』 권95, 24년 6월 辛卯; 甲午.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³⁾

또 같은 해 역시 흘러온 울적함을 사칭한 오도리 야오내의 경우, 邊境에서 적발되어 상경하지 못한 채 함길도 도절제사에 의해 구류되었고 추고 당하게 되었으나, 세종은 ‘도망해 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시 귀순하여 온다면 반드시 厚待할 것’이라고 되풀이하여 타일러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깨닫게 하여 죄를 주지 말고 돌려보내도록 하였다.⁹⁴⁾ 1484년(성종 15)에도 建州右衛의 사송을 사칭한 馬阿多右 역시 위사가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 사람이 온 것을 차마 물리칠 수 없으므로 우선 접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⁵⁾ 그러나 마아다우를 돌려보내면서는 ‘건주우위의 추장 보화토가 親族을 보내면 평안도를 거쳐 오는 것도 허가하고 후한 例로 접대할 것’이라 타이르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490년(성종 21)에 내조하였던 울량합 奴木哈과 刺力答 등의 경우도 同類人의 告身을 賣買해 가지고 왔다가 발각되었는데, 노목합에 대해 고신을 속여서 지참하여 朝廷을 기망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어 추국하려 하였으나, 본래 예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⁶⁾ 그러나 노목합 등이 다른 사람의 고신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만 司猛의 직을 제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⁷⁾ 그리고 1496년(연산군 2)의 林大, 1530년(중종 25)의 斜老 역시 中樞의 직을 받았다고 사칭하였다가 司猛의 직으로 낮추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⁹⁸⁾

93) 『世宗實錄』 권98, 24년 12월 癸巳.

94) 『世宗實錄』 권98, 24년 10월 乙巳. 세종은 동맹가침목아가 패망한 후 그 아들인 童倉과 이복동생 凡察을 후대하면서 그대로 머물게 하여 조선의 藩籬로 삼으려 하였으나, 1440년(세종 22)에 동창과 범찰은 조선을 배반하고 建州衛 李滿住에게로 옮겨 갔고 亏乙主 등도 이때 함께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 也吾乃에게 말하도록 한 내용, 즉 ‘도망해 간 다른 사람들과 귀순하여 오라’는 것은 이때 도망한 사람들과 함께 귀순하도록 한 말이다.

95) 『成宗實錄』 권171, 15년 10월 辛未.

96) 『成宗實錄』 권237, 21년 2월 戊申.

97) 위와 같음.

따라서 조선에서는 위사 또는 통교 방법을 위반한 여진인들에 대해 ‘大國이 먼 지방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으로서 용서하기도 하고, 낮은 관직이지만 오히려 관직을 제수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의 통교 방식을 지키고 순응하게끔 하려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넷째, 변장으로 하여금 여진인들의 관교(고신)를 빠짐없이 考閱한 뒤에 올려 보내게 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내조한 元多沙와 奴木哈이 관교를 僞造한 것으로 판명되자, 성종은 원다사와 노목합이 관교를 속이고 거짓으로 꾸민[詐僞] 이유를 推鞠하게 하였다.⁹⁹⁾ 예조에서는 이들에 대해 ‘너희들의 관교는 모두 속임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관직에 제수될 수 없을 것이다’하고, 회령의 관리와 鄉通事가 당초에 살피지 않고 올려 보낸 것도 아울러 추국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¹⁰⁰⁾ 그리고 鄭蘭宗 또한 ‘鎭將이 자세히 살펴서 위조한 흔적이 나타나면 감사와 절도사에게 보고하여 힐문해서 고신을 회수하는 한편 올려 보내기를 허락하지 말고 엄하게 책망하여 물리칠 뿐인데, 지금은 살피지 못하고 올려 보내게 하였으니 진장에게 죄가 있다’¹⁰¹⁾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경하려는 여진인들의 고신을 확인하는 것은 변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²⁾

그러던 중 같은 해(1485년) 達乙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교를 빌려서 내조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이렇게 여진인들이 조선의 관교를 위조하거나 빌려서 오는 경우가 발생하자, 조선에서는 邊將으로 하여금 내조하는 여진인들의 관교를 빠짐없이 考閱한 뒤에 올려보내도록 立法한

98) 『燕山君日記』 권13, 2년 3월 辛巳; 『中宗實錄』 권67, 25년 2월 辛未.

99)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甲子; 丁丑.

100)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甲子.

101)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乙亥.

102) 당시 元多沙와 奴木哈에 대한 추국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成宗實錄』에 나타나지 않는다.

것으로 나타난다.¹⁰³⁾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을 검토해 보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受職女眞人이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에게 준 고신의 양은 陞職 등으로 인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수여해준 고신이 일종의 ‘통교허가증’이 된 상황에서 내조하는 여진인들이 지참한 고신을 면밀히 고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527년(중종 22)년 성저야인의 관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상경시켰을 때와 같이 변경의 吏屬이 형문을 당하고, 首領 또한 추고를 당하기도 하였다.¹⁰⁴⁾

다섯째, 官敎를 僞造, 借用, 賣買하여 내조하는 경우, 그 관교를 追奪하는 것이다. 우선 변경에서 鎭將이 여진인들의 관교를 고열할 때 위조한 흔적이 나타나면 감사와 절도사에게 보고하여 회수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듯 하고,¹⁰⁵⁾ 혹 상경한 이후에 적발되더라도 고신을 추탈당한 사례들이 나온다.

실제로 1490년(성종 21) 奴木哈과 刺力答은 예조에서 그 고신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고,¹⁰⁶⁾ 1526년(중종 21)에는 ‘지난해에[往年]에 여진인들이 上京하였을 때 명백하지 않은 관교는 회수해서 빼앗은 것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다.¹⁰⁷⁾ 1530년(중종 25)에 斜老 역시 중추의 관교를 빼앗겼는데,¹⁰⁸⁾ 城底人(城底野人)들 중에는 관교가 잘못되어 조선에 빼앗긴 자들이 많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⁰⁹⁾ 또 1527년(중종 21) 상경한 성저야인 중 8인의 고신을 추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03) 『成宗實錄』 권186, 16년 12월 戊戌.

104) 『中宗實錄』 권58, 22년 1월 己丑.

105) 『成宗實錄』 권185, 16년 11월 乙亥.

106) 『成宗實錄』 권237, 21년 2월 戊申.

107) 『中宗實錄』 권57, 21년 11월 壬辰.

108) 『中宗實錄』 권67, 25년 2월 辛未.

109) 『中宗實錄』 권67, 25년 2월 辛未.

그러나 여진인들의 관교를 빼앗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즉 이때 더 나아가서 온성진 성저야인들의 관교를 추월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성저야인들이 동요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저 성저야인 자신의 (관교만으로) 中樞가 되는 者가 많지 않고, 대개 族親의 관교를 빌어 上京하여 속이고는 俸祿을 받아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하지 않으니, 저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관교가 부실한) 이러한 야인들을 上送(上京)시키면 邊將과 色吏들이 모두 죄를 입을 것이고, 상송시키지 않으면 변란이 朝夕으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 兵使 柳繼宗은 ‘祖宗朝 이래 혹 50~60년, 혹 30~40년, 혹 10~20년 동안 이와 같아서 上京해서 祿을 받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論하여 추탈한다면 온성 뿐만이 아니라 六鎭도 동요될 것입니다. 예전대로 해야 합니다.’ 했습니다.”¹¹⁰⁾

이것을 보면 성저야인들은 대개 족친의 관교를 빌려서 상경하여 속이고는 봉록을 받거나 중추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행태가 이미 오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행태는 舊習 또는 慣例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찌면 이러한 구습과 관례를 변방의 吏屬들이나 파견된 수령들이 認知하고 있었고, 默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鎭將(발언자는 온성부사)은 ‘이러한 야인들을 上送(上京)시키면 邊將과 色吏들이 모두 죄를 입을 것이고, 상송시키지 않으면 변란이 朝夕으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처리하오리까?’하고 난처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병사 유계종 또한 이러한 구습과 관례가 60~1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하루아침에 관교들을 추탈한다면 온성뿐만 아니라 6진 전체가 동요되어 성저야인들이 배반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110) 『中宗實錄』 권58, 22년 1월 己丑.

때문에 예전대로 대우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맺음말

조선전기 소위 ‘女眞 僞使’의 발생은 4군 6진의 설치 이후 조선과 홀라온 울적합과의 직접적인 통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다른 여진인들에게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진 위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인신을 빌려 쓴[借著] 경우, 2) 元나라의 蒙古 인신을 사용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이름을 詐稱[冒名]한 경우, 4) 여진 위소의 使送(使人)을 詐稱한 경우, 5) 官敎를 僞造, 借用, 賣買하여 내조하는 경우(① 官敎를 僞造하는 경우 - 관교를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詐僞] 경우, ② 官敎 또는 告身을 빌리거나 賣買해 가지고 오는 경우), 6) 두 가지 이상의 통교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유형들은 인신과 관련된 것,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여진 위소의 사송을 사칭한 것에서 점차 관교를 위조, 차용,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여진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된 고신(관교)의 지급이 점차 조선과의 통교권을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직을 받은 여진인들이 그 증명으로서 조선으로부터 받았던 고신을 변경의 진장이나 수령에게 제시함으로써 조선과 통교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문서로 된 이러한 고신은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한 것이었다는데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들 ‘여진 위사’를 방지하는 방편으로 여진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진인들에 대한 통교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大國이 먼 지방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으로 용서하고 돌려보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선은 변장으로 하여금 여진인들의 관교를 빠짐없이 考閱한 뒤에 올려 보내게 하였고, 혹 변경에서든, 혹 상경해서든 官敎를 僞造, 借用, 賣買한 경우, 그 관교를 追奪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교를 추탈하는 것은 여진인들, 특히 성저야인들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는데, 성저야인들은 관교를 빌려서 상경하여 속이고는 봉록을 받거나 중추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행태가 이미 舊習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관례가 되어버린, 조선과의 통교 방식이 되어버린 이 행태들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통교를 제한하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성저야인, 즉 두만강 유역의 중심부락으로 성장한 ‘藩胡 部落’의 반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조선이 관직을 주었다는 증빙인 관교, 고신, 직첩 등은 이미 ‘통교 증명서’가 되어 버렸고, 그것은 문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변조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통교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점차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두만강 유역의 여진의 성장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시기와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성해진 추장 忽僞는 職帖 1백장을 한꺼번에 요구하여 조선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있었고,¹¹¹⁾ 누루하치가 번호들을 침탈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번호가 조선의 직첩을 바치기도 하였던 것이다.¹¹²⁾

‘여진 위사’의 유형을 통해 보면, 이들은 결국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

111) 『宣祖實錄』 권190, 38년 8월 丁卯; 권192, 38년 10월 丁卯.

112) 『宣祖實錄』 권134, 34년 2월 己丑.

기 위해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감추고 조선과 통교하려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과의 통교를 목적으로 인신과 관교를 속이고, 위조하며, 다른 사람이나 위소의 使送을 사칭하는 등 조선에서 정한 통교방식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위사’는 “거짓의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를 위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들의 성격 및 도향목적에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통교위반자’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¹¹³⁾는 해석은 비단 조선과 일본관계에서 발생한 위사뿐만 아니라 소위 ‘여진 위사’에도 접합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위사’에 대한 문제는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간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위사’라는 명칭과 개념문제, 그리고 조선에서 ‘위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였는지 등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단 ‘위사’ 문제는 조선과 일본간에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과 여진과의 통교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소위 ‘위사’에 대한 접근 방식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선전기 ‘위사’의 명칭과 개념,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13) 한문종, 2005(a), 앞의 논문, 224~225쪽 및 2005(b), 앞의 논문, 15쪽.

Abstract

A Study on Occurrence of and Dealing with False
Ambassadors of the Jurchen During the Early Years of
Joseon Dynasty

Han, Seong-Ju

In the early years of Joseon Dynasty, 'false ambassadors of the Jurchen tribes' started to appear when the direct diplomatic relation between Joseon and Holjaon Oljeokap(忽刺溫 兀狄哈) was made after the foundation of 4 Guns and 6 Jins. It seems that this occurrence affected other Jurchen people to follow it.

The types of 'false ambassadors of the Jurchen tribes' so far clarified are as follows:

First, borrowing stamps; second, using Mongol(元) stamps; third, false assumption of another person; fourth, false statement of a messenger of false ambassadors; fifth, forgery, borrowing, or trading of official statements; sixth, two or more of the violations above. The fact that such types were related to stamps, another persons' name, false assumption of false ambassadors indicate that there were already many forgery, borrowing, or trading of official statements. It is thought that assigning governmental offices to Jurchen tribes as well as royal assignment of offices became the cons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Joseon in the end. In other words, as Jurchen people who were given offices presented the official certificates from Joseon to chieftains in borderlands for passage. The problem is, though, such documented writs of appointment could be easily fabricated or forged.

As a way of prevent such 'false ambassadors of the Jurchen tribes,' Joseon

endeavored to collect information on Jurchen people, and started to limit the relationship with Jurchen tribes. In the mean time, Joseon would forgive and let them leave as a great country out of generosity to embrace people from far regions. However, the chieftains were ordered to investigate thoroughly the writs of appointment of Jurchen people before passage, and to take over such false documents, whether in Seoul or in side areas, when finding them forged, borrowed, or traded.

In fact, seizing false writs of appointment resulted in disturbanc among Jurchen people, especially the tribes who surrendered(城底彼人) and submitted to Joseon since it already became old customs to borrow such certificates, deceive officials, receive stipends or become officials. To limit such acts, which became a custom and a way of diplomatic policy to them, was like a limitation to the diplomatic relationship. Therefore, this could resulted in a revolt of the major tribe over the basin of Duman River(城底彼人).

In examination of the types of 'false ambassadors of the Jurchen tribes,' it is made clear that they tried to disguise the true identities for a financial purpose and attempted to get profits in trading with Joseon. They deceived the officials, forged, and assumed a false name of a messenger in many different ways by cunningly exploiting the established methods of exchange with Joseon. Thu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approach to 'false ambassadors,' which is one of the hot issues among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on Korean-Japan history in the age of Joseon Dynasty, and to investigate the title, concept, and appreciation of 'false ambassadors' during the early years of Joseon comprehensively.

Key Words : Joseon(朝鮮), Jurchen(女眞), False Ambassadors(僞使),
Examples(事例), Types(類型), Measures(對應), Handle(處理)